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위탁운영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57 |
|----------|----|

제안연월일 : 2022. 10.

제안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위탁시설 현황 : 2개소

| 시설명                  | 위 치                                  | 정 원<br>(명) | 연면적                        | 지원예산(천원) |        | 비고 |
|----------------------|--------------------------------------|------------|----------------------------|----------|--------|----|
|                      |                                      |            |                            | 인건비      | 운영비    |    |
| 계                    |                                      |            |                            | 147,260  | 33,040 |    |
| (가칭)공공형<br>실내놀이터(평창) | 평창읍 평창중앙로67<br>(평창군문화복지센터 1층)        | 20         | 162m <sup>2</sup><br>(49평) | 56,960   | 13,040 |    |
| (가칭)공공형<br>실내놀이터(진부) | 진부면 하진부리 1289-46<br>(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1층) | 20         | 154m <sup>2</sup><br>(47평) | 90,300   | 20,000 |    |

## 3. 위탁개요

- 위탁시설 : 2개소(평창, 진부)
  - 평창 : 평창군문화복지센터 1층
  - 진부 :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1층
-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위탁내용
  -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 관리 및 운영
  - 이용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개소예정 : 2023. 1월

#### 4. 기대효과

- 평창군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어린이들의 성장발달과 정서 생활에 크게 기여함.

#### 5. 관련자료

- 관련법령 1부. 끝.

## 관계법령 발취

###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9., 2011. 5. 30., 2013. 3. 23., 2014. 6. 3.,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7., 2017. 7. 26., 2020. 12. 22.>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 삭제 <2008. 12. 19.>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의2.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 「아동복지법」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평창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평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 「평창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이하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직, 시설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제16조(협약체결)** 군수는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조건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놀이터 이용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